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06
------------	------

발의연월일 : 2017. 1. 26.

발의자 : 강창일 · 정재호 · 신창현
이종결 · 이철희 · 김철민
황주홍 · 남인순 · 박정
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국가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그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만 받으면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사업이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공고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있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등 개발사업에 따

른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7조의2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
2. 개발사업이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는 개발사업의 승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방법과 절차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신청을 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47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u></p> <p><u>①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u></p> <p><u>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u></p> <p><u>1.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u></p>

농어업인단체인 경우

2. 개발사업이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청취는
개발사업의 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야 한다.

④ 그 밖에 주민 및 관계 전문
가의 의견 청취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